

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의안번호 제1213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3. 23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 : 2010. 3. 23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10. 3. 31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안전 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바 『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』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

3. 주요내용

- 고성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고성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(안제7조)
-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여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(안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없음
다. 규제심사 : 규제신설, 폐지 등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

- 국무총리실 주관 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” 및 소방재청장의 특별지시 등과 관련, 고성군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12월말까지 개정 완료토록 되어 있었으나, 개정이 다소 지연된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지난해 12월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늦은 사유는?
- 답 :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넘겼는데 예산 등으로 해를 넘기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임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